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, 약속

보도시점 2024. 4. 30.(화) 배포 즉시

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4.30.(화) 한겨레, “금방 준다더니... 임금 1300만원 떼여”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, 경향신문, “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 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”

2. 설명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**내·외국인을 불문**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**강력하게 대응**하고 있음

○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더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**「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」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**(시행 ’24.4.22.)한 바 있음

* [주요내용] ❶ 시정지시-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사건 처리, ❷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활성화, ❸ 적극적인 구공판(정식의견서 송치)으로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

□ 또한, 고용허가(E-9·H-2)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**현장 지도·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·지원**하고 있음

○ 우선,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“**현장 예방점검의 날**”을 **4.5배 확대**(‘23년 1천개소→**‘24년 4천5백개소**)하여 **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**를 **집중 점검**하고 있으며,

– 이와 같은 **지도·점검** 및 **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** 시, **법 위반 사업장**에 대해서는 **고용허가 취소·제한** 등을 포함한 **행정·사법 조치**를 할 계획

○ 아울러, **외국인근로자 체류 관리를 적극 지원**하기 위해 **고용노동부·인력공단·안전보건공단·공인노무사**가 힘을 합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**고용허가·임금 등 근로조건·산업안전** 등 **종합적인 컨설팅**을 제공하는 **합동 현장 컨설팅**(‘24.5.1.~12.31.)도 제공할 예정임

○ 지도·점검과 함께 **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**해서 **보증보험 제도를 마련***하여 운영 중이며,

* ❶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·점검 시,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
❷ 보장한도 확대 (2백만원 → 4백만원, '21.2월) 및 보증기간 연장(3년 → 4년 10개월, '23.9월)

○ **외국인 근로자 신고사건 조사 시** 언어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①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하는 **현지어 상담원(60여명)**, ②지방관서 수시 활용 가능한 **통역원(150여명)**, ③외국인 근로자 전용 **전화상담센터(1577-0071) 현지어 상담원(32명)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구제**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
□ 앞으로도 **내·외국인을 불문**하고,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**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**함으로써, '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'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기환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희 (044-202-7739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욱 (044-202-75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